

#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철도차량에 대한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차량 정비사 간의 그 수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복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철도차량정비”의 기존 용어를 유럽 및 국내법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음(제2조제1호 개정)
- 나. 철도운영자가 정비결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탁정비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함(제10조제2항3호 개정)
- 다. 철도차량정비 주체와 차량제작사의 정비책임 및 보증사항을 명확화하고 이에 따른 예외사항 제시(제10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통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최종적”을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정비자는 철도운영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전쟁·폭동 등 불가항력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차량파손 및 고장
2. 건널목사고, 사람 및 동물 충돌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고장
3. 기장(기관사), 열차승무원의 열차 취급 부주의 및 조치지연 등으로서 조사결과 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4. 승객 또는 제3자에 의한 차량 사고, 손상 및 고장(예: 창문, 의자 등 객실설비 등)
5. 철도운영자가 수탁정비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뢰하여 개량 또는 기술변경을 시행하여 발생한 장애
6. 차량제작자의 설계·제작·부품(소프트웨어 포함, 수명주기 이내)

결함이 명백한 경우

7. 기타 수탁정비자의 귀책이 아닌 명백한 사유로 인한 사고, 손상 또는 고장

제1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17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11. (생략)</p> <p>제10조(위탁정비) ① (생략)</p> <p>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해당 정비에 대한 정비결과는 철도운영자가 <u>최종적인</u> 책임을 질 것</p> <p>4.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 ----- ----- ----- <u>통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2. ~ 11.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탁정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우선적</u>----- -----</p> <p>4. (현행과 같음)</p> <p>③ <u>수탁정비자는 철도운영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u></p>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전쟁·폭동 등 불가  
항력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차량파손 및 고장

2. 건물목사고, 사람 및 동물 충  
돌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고장

3. 기장(기관사), 열차승무원의  
열차 취급 부주의 및 조치지  
연 등으로서 조사결과 철도운  
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4. 승객 또는 제3자에 의한 차량  
사고, 손상 및 고장(예: 창문,  
의자 등 객실설비 등)

5. 철도운영자가 수탁정비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뢰하여  
개량 또는 기술변경을 시행하  
여 발생한 장애

6. 차량제작자의 설계·제작·부  
품(소프트웨어 포함, 수명주기  
이내) 결함이 명백한 경우

7. 기타 수탁정비자의 귀책이  
아닌 명백한 사유로 인한 사  
고, 손상 또는 고장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제16조(재검토기한) -----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024년 1월 1일 -----  
-----  
-----  
-----  
-----  
-----  
-----  
-----  
-----

제17조(규제의 재검토기한) -----  
-----  
-----  
----- 2024년 1월 1일 -----  
-----  
-----  
-----  
-----  
-----  
-----  
-----